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59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59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97

제출연월일 : 2026. 8. 27.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

5) 입법예고 : 2026. 7. 14. ~ 8. 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존속기한) ----------2031년 12월 31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